

## 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어책임관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혁신기획재정담당관
2. 금융소비자정책과장
3. 자본시장과장
4. 금융정책과장
5. 구조개선정책과장
6. 은행과장
7. 금융혁신과장

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.

**제3조(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)**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민간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.

1. 임기가 만료된 때
2.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
3.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

**제4조(기능)** 협의회는 「국어기본법」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금융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.

1.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
2.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·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운영)**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**제6조(전문소위원회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·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

수 있다.

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간사)** ① 협의회를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8조(협조요청)**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9조(수당 등)**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 전문가,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위 축 장

○ 성 명 :

○ 소 속 :

○ 위 축 기 간 : 20 . . . . ~ 20 . . . .

위 사람을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 및 「금융위원회  
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」 제3조에 따라 전문용어  
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위원회위원장

직인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120g/m<sup>2</sup>)

( )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

- 1. 안 건 :
- 2. 검토 기간 :
- 3. 결과 보고 내용('붙임'과 같음)
- 4. 검토 의견 :
- 5. 전문소위원회 위원

| 성 명 | 서 명 | 성 명 | 서 명 |
|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
6. 관계 전문가

| 성 명 | 서 명 | 성 명 | 서 명 |
|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
「금융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」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( )소위원회 위원 (서명 또는 인)

( )소위원회 위원 (서명 또는 인)

( )소위원회 위원 (서명 또는 인)

금융위원회위원장 귀하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